

#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

98

제출연월일 : 2014년 12월 1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농어촌개발기금 용자사업의 이율 인하 및 기금운용 방안 개선을 통하여 농·어업인에게 기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, 농·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농어촌개발기금 용어 정비(안 제2조)
  - 종료된 사업(지역명품)의 용어 및 내용 삭제
- 농어촌개발기금 사업 지원 범위 확대(안 제5조)
  - 제1호 내용 중 농·어업인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에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추가
- 용자금 이자 이율 인하(안 제8조)
  - 용자금 이자 : 1.5% ⇨ 1.0%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소득개발”을 “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시설자금은”을 “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융자금의 이자는 연 1.5퍼센트로 하되, 차세대 농업인 및 귀농인은 연 1퍼센트로 하며”를 “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받은 융자 지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상한기일이 도래된 때부터는 연 1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“지역명품”이란 다음의 품목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1지역1명품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품목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지역 농특산물</u></p> <p>6. ~ 8. (생 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사업지원)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농·어업인의 <u>소득개발을 위한 사업</u></p> <p>2. ~ 6. (생 략)</p>	<p>제5조(사업지원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소득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</u>----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사업비 지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용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	<p>제7조(사업비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

1. 시설자금은 농·어업인, 차세대  
농업인, 귀농인은 1억원 이내  
로 하며, 생산자단체와 법인체  
는 5억원 이내로 한다.

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8조(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) ①  
(생략)

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.5퍼센트  
로 하되, 차세대농업인 및 귀  
농인은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  
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  
특별회계 취급약정 금융기관에  
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 
이자를 가산한다.

③ (생략)

1.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  
금은-----  
-----  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) ①  
(현행과 같음)

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 
로 하며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

제4조 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·소비자 등의 책임)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,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, 농어업 인력육성,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,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